

2018학년도 통계 및 2019학년도 1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육과정 안내집

[학생용]



영남대학교
Yeungnam University

**영남대학교 취업처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목 차

I. 현장실습 교육과정	
1. 현장실습이란	1
2. 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1
3.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1
4. 현장실습 참가자격(학생)	1-2
5. 학점인정	2-3
6.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3
II. 현장실습 이수 유의사항 3-4	
※ 장기현장실습 신청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 안내 포함	
III. 참여학생 지원사항 및 수강료 납부 안내	
1. 참여학생 지원사항	4-5
2. 현장실습 납입금(수강료, 등록금) 납부	5
3. 현장실습 중도취소 절차 및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5
IV. 현장실습 운영절차 5-6	
V. 기타	
1. 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6
2. 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6
VI. 현장실습 시행 시 유의사항 및 참가신청 안내	
1. 시행 시 유의사항	7
2. 참가신청 및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안내	7
[별첨1] 현장실습 기간조건표 (1), (2)	8, 9
[별첨2]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안내	10
[별첨3] 현장실습 F A Q	11
[별첨4] 현장실습 동의서 (서식)	12
[별첨5] 장기현장실습 추천서 (서식)	13
[별첨6]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서식)	14

☎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 053) 810-1050 / 4584 / 1046

✉ E-MAIL : kimjc@yu.ac.kr / jhlee92@ynu.ac.kr / jadamsy@yu.ac.kr

☎ FAX : 053) 810-2020

1. 현장실습 교육과정

1.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 기간 기업(기관)에서의 실습활동을 통하여 산업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후 취업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산학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 모집기간 및 실습가능기간

학기	실습구분	집중모집기간		실습가능기간 (별첨『현장실습 기간조건표』참조)
		기업(기관)	학생	
계절제	단기 현장실습 (4주 160시간 이상)	2018.10.15.(월) ~ 2018.11.16.(금)	2018.11.19.(월) ~ 2018.12.07.(금)	2018.12.24.(월) ~ 2019.02.22.(금)
	중기 현장실습 (8주 320시간 이상)			
학기제	장기 현장실습 (12주 480시간 이상)	2018.10.29.(월) ~ 2018.12.28.(금)	2018.11.19.(월) ~ 2019.01.04.(금)	2019.01.02.(수) ~ 2019.07.17.(수)

※ 상기 집중모집 기간 외에도 동계 방학 또는 학기 중 상시 참가신청 접수 가능.

3.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 현장실습 기준 : 평일 주 5일, 일 8시간 이상

학기	현장실습 교육과정	실습기간	인정학점	이수구분	교과목명	성적평가
계절제 (2018-동계)	단기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	4주 (160시간) 이상	3학점	전공선택	각 학부(과)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명	P / F
	대학공통 현장실습			일반선택 전공선택	현장실습(1), 현장실습2(1)/ 현장실습(4), 현장실습2(4)	
학기제 (2019-1)	중기 대학공통 현장실습	8주 (320시간) 이상	6학점	일반선택 전공선택	현장실습(2), 현장실습2(2)/ 현장실습(4), 현장실습2(4)	
	장기 대학공통 현장실습	12주 (480시간) 이상	9학점	일반선택 전공선택	현장실습(3)/현장실습2(3) 현장실습(6)/현장실습2(6)	
		16주 (640시간) 이상	12학점			
20주 (800시간) 이상	16,18학점 (학부(과)기준학점에 따름)					

4. 현장실습 참가자격 (학생)

구분	일반대상	LINC+사업 지원 대상
신청학년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현재학적 기준)	3, 4학년 (현재학적 기준)
학적상태	재학생 (현장실습 학점취득 학기 기준 학적 상태) ※ 제적생은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불가	
대상학부(과)	대학전체	LINC+사업 참여학부(과) (단, 야간학부(과) 제외)
★★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1. 졸업(수료)예정자 원칙적 신청 불가 2. 졸업(수료)예정자의 경우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졸업(수료)예정자 신청 가능요건 : 해당학기 졸업사정 전까지 현장실습 학점 취득 완료 가능한 자 ※ 졸업사정 기간 내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취득 충족 요건 - 2018-동계 계절제 현장실습 : 2019.01.22.까지 실습종료, 실습종료일 3/4선 기준일 까지 현장실습 성적평가가 완료된 자 - 2019-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 2019.07월 2째 주 까지 실습종료 및 실습보고서 작성 완료	

공통사항	1. 현장실습은 재이수 과목이 아니므로 동일한 교과목 명으로는 중복 이수 불가 2.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은 현재학적 기준 3,4학년 재학생에 한하여 신청가능
유의사항	1.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 이수 지정 학부(과) 소속 교직이수자 : 현장실습 신청 및 학점인정은 가능하나, 실습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P.4 지원금 지원 안내) ※ 단, 상기에 해당하는 교직이수자가 교원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을 기 이수하였고, 교직이수와는 무관한 2번 이상의 현장실습 재신청인 경우에는 학점취득 및 대학실습지원비 지원 가능 2. 학생의 신청자격요건에 따라 현장실습 지원사업 구분별 실습지원금액 차이 있을 수 있음 ※ 교내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교육부 LINC+사업 / 미래창조과학부 ICT / 중소벤처기업부 R&D 산업인턴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5. 학점인정

가. 공통사항

- 1) 학점인정학기 : 현장실습 수행학과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 2)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인정가능 학점 기준 (★★)**
 - 가)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 (2017.08.29.개정)
 - 나)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36학점** 을 초과할 수 없다
 - 다) 현장실습 교과목을 **전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국내 및 해외 현장실습을 합하여 **최대 18학점**을 초과 할 수 없음

나. 대학공통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시

- 1) 대학공통 현장실습은 기본적으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 ※ 단, **실습직무 내용이 전공 관련인 경우에 한하여**, 실습시작 후 **2주 내에 학점인정심사 신청** 작성 완료한 경우에는 소속학부(과) 전공 교수회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
 - ※ 대학공통 현장실습 전공학점 신청방법 :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학점인정심사] 신청서 작성
 - 2) 대학공통 현장실습 과목은 **전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아래의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신청불가 (★)**
 - 가) 복수전공 이수자는 본전공과 복수전공 모두에서 신청불가, 편입생 신청불가
 - 나)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에서 신청 불가
 - 3) **장기 현장실습은 신청학점 수에 따라 전공선택과 일반선택을 조합하여 학점인정 신청 가능**
 - 가) 장기 현장실습 최대 인정가능 학점 수: 16 또는 18학점 (소속전공 학기당 수강신청 기준학점 참고)
 - 나) 학점단위등록 학생은 3, 6, 9학점 중에 선택하여 인정 가능
 - 다) 학점조합 신청 산정기준은 3학점 단위 전공선택으로 우선 인정 후, 잔여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 (예, 현장실습 교과목 최대 16학점 취득자인 경우 전공선택 12학점, 일반선택 4학점 취득 가능)
- ※ **장기현장실습 교과목 이수구분별 학점 조합표**

학점	9학점		12학점		학기별 수강신청 기준학점			
	전공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16학점		18학점	
이수구분	전공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전공선택	일반선택
이수구분별 인정학점	0	9	0	12	0	16	0	18
	3	6	3	9	3	13	3	15
	6	3	6	6	6	10	6	12
	9	0	9	3	9	7	9	9
	-	-	12	0	12	4	12	6
	-	-	-	-	16	0	15	3
	-	-	-	-	-	-	18	0

다.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시

- 1)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은 이수구분 전공선택 3학점으로 인정
 - ※ 실습기간이 4주 이상 초과한 경우에도 최대 3학점까지만 인정 가능
 - (8주 이상 실습에 대해 6학점 취득 희망 시, 대학공통 교육과정인 중·장기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신청)

- ※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은 전공선택 교과목이므로, **별도의 전공학점인정 심사신청 불필요**
- 2) 편입생, 복수전공자: 학부(과) 편성 전공 현장실습 신청가능 (※ **부전공 이수자 신청불가**)
- 3) 교과목 명은 각 소속학부(과) "교육과정표" 참고. (학기별 편성된 현장실습 전공 교과목 명 확인)

6.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

가. 이수학기 내 현장실습 교과목 외 잔여학점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1) 계절제 단·중기 현장실습 신청 시

가) 방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 과목과 타 계절학기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6학점 초과 수강신청 불가 (6학점까지는 가능)

나) 6학점 이내에서 현장실습 교과목 외 타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단, 인터넷 강좌는 기간중복과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학점 수(6학점) 내 에서 신청가능

2) 학기제 장기 현장실습 신청 시

가) 장기현장실습 기간 중인 학생은 정규학기 내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넷 강좌를 수강할 수 있고, 장기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이 중첩되어도 인터넷 강좌는 수강할 수 있음.

구 분	정규학기 잔여학점 수강신청	장기현장실습 참여 시 계절학기 수강신청
수강신청 기준	- 12주 현장실습 : 현장실습 9학점 취득, 잔여학점 7~9학점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가능 - 16주 현장실습 : 현장실습 12학점 취득, 잔여학점 4~6학점 인터넷 강좌 수강신청 가능	- 장기 현장실습 기간과 계절학기 기간 중첩 시, 인터넷 강좌에 한하여 수강 허용

나) 주말시간에 편성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수강신청 기준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음.

※ 12주(9학점), 16주(12학점) 현장실습 참여학생

- 수강신청 기준학점 내 잔여학점에서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수강신청 가능

※ 20주(16, 18학점) 현장실습 참여학생

-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우선 신청, 잔여학점 현장실습 학점으로 신청

예) 기계공학부 20주 장기현장실습 참여 시 : 기계공학과제(캡스톤디자인) 2학점, 현장실습 14학점

다) 현장실습 교과목은 성적누적 처리 과목으로 참여학생은 별도의 수강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수강확정 인정기준: 실습생 선발확정 및 수강료 납부확인 완료 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확정으로 봄.

II. 현장실습 이수 유의사항

1. 장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유의사항

가. 장기현장실습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사전에 소속 전공주임교수 및 학부(과)장 과의 면담 후 추천서를 받아 소속학부(과) 행정실로 제출

나. 교내·외 장학금 지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 (☎ 상세문의 : 장학팀 810-1141)

- 1) 한 학기 수강과목 중 P/F 과목이 6학점을 초과(6학점까지는 포함되지 않음)하는 경우에는 교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됨
- 2) 한 학기 수강과목 전체 P/F 과목인 경우, 국가장학금 신청 기준은 현장실습 이수 직전학기 성적평가 기준 반영하여 신청 가능
- 3) 한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내에서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학점 수를 제외한 잔여학점에 대한 온라인 및 종합설계(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수강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 관련 유의사항**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

가) 국가장학금 신청기준 : 12학점 이상 학점이수, 취득성적 80점(환산점수) 이상

- ※ 수강신청 예시) 장기현장실습 12주(9학점), 온라인강좌(6학점) 수강한 경우
 - 온라인강좌 80점 이상 :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 온라인강좌 80점 미만 : F학점 등 80점 미만 성적취득 시, 국가장학금 신청 불가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 : 12학점 이상 학점이수, 취득성적 70점(환산점수) 이상

- ※ 수강신청 예시) 장기현장실습 12주(9학점), 온라인강좌(6학점) 수강한 경우
 - 온라인강좌 70점 이상 :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 온라인강좌 70점 미만 : F학점 등 70점 미만 성적취득 시, 학자금 대출 신청 불가

2. 현장실습생은 아래의 최소 실습기간만큼 근무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결근이 발생 할 경우 결근일수 (시수)만큼 추가 근무를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표에 명시된 실습과정별(단기, 중기, 장기) 최소 실습기간(시수) 충족
 - 실습기업(관)에서 지정한 실습기간 충족
 -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 내 전체 휴가 실시 시, 해당하는 결근 일수만큼 추가 근무 실시 (※ 2018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지침 변경에 따름)
3. 현장실습 이수 학기에 휴학,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학점취득 불가 시, 현장실습 지원금 지급 불가
4. 현장실습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습시작 전 반드시 각 소속 학부(과) 또는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으로 사전문의 후 현장실습 이수신청(학생종합정보시스템)을 해야 함 (원칙적 사후 신청 불가)
5. 현장실습 중도 취소자의 경우, 반드시 학부(과)로 현장실습 교육자료집(학생용)의 “현장실습 취소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정상 취소 처리 됨. (수강료 환불처리 등)

III. 참여 학생 지원 사항 및 수강료납부 안내

1. 참여학생 지원사항 (대학)

가. 현장실습 지원비

구분	실습기간	인정학점	대학 실습지원금	
			기준금액 (공통)	추가 지원금 (교통비 추가 지급 대상자)
단기	4주(160시간) 이상	3학점	40만원	※ 지원대상 : 대구, 경산 이외의 관외지 실습생 (달성군, 경북칠곡, 왜관 포함) - 단, 대기업 인턴채용 선발을 통한 현장실습 학점연계 신청자인 경우 실습지역과 무관하게 최소 기준금액 지급 ※ 추가 지원금액 : 교통비 20만원
중기	8주(320시간) 이상	6학점	60만원	
장기	12주(480시간) 이상	9~18학점	※ 2019-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이수자에 대해서는 교내 국비지원 사업 재원 현황에 따라 대학실습지원비 지원 여부 및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고용부 재학생직무체험프로그램, 미래창조과학부 ICT, 중소벤처기업부 R&D 산업인턴 지원 사업 현장실습 지원금은 각 사업 규정에 따라 대학 실습지원금 상이함. (상기 지원금 지급기준 적용 아님)

※ 실습지원비 산정 기준 : 취득학점 수 기준 실습지원비 산정, 월 지원금 아님 (일시금 지급)

예) 중기 8주 실습생이 3학점(학과차체교과목) 취득 시: 3학점 기준 실습지원비 지원

※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

- 1) 현장실습 이수 후 해당학기까지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미취득 한 자
- 2) 학부(과) 편성 전공현장실습 필수 이수 지정 학부(과) 소속 교직이수자
: 건설시스템공학과, 기계공학부, 신소재공학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화학공학부, 파이버시스템공학과, 사범대학, 건축학부 (※ 상세사항은 각 학부(과)별 문의 요망)
- 3) 기타 대학을 통해서가 아닌 외부 기업(관)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현장실습(인턴십) 연계 프로그램 참가자인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취업및현장실습지원팀 상담을 통해 검토 가능
하나 대학 실습지원비는 국고 이종 지급 등의 문제로 지원 불가

나. 현장실습생 상해보험가입 지원

다. 한국장학재단 주관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지원 (※ 상세내용 10페이지 별첨1 참고)

2. 현장실습 납입금(수강료, 등록금) 납부

가. 단기 및 중기 현장실습 참가자 [학점인정학기 : 계절학기(2018-동계)] :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1) 단기 현장실습(3학점) : 6만원 / 2) 중기 현장실습(6학점) : 12만원

3) **수강료 납부 계좌 : 대구은행 91000-1127-1790 (예금주 : 영남대학교 총장)**

※ 수강료 납부 시, **본인 학번 뒤 4자리와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입금자 확인가능 (계좌주 변경 불가 시, 본인이름 입금에 한해 이체 가능)**

예) 21612345 김영남 : "2345김영남" 으로 입금 요망

나.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학점인정학기 : 정규학기(2019-1학기)] : 2018-1학기 등록금 납부

1) 장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해당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

2) 단, 학점단위 등록자의 경우 해당학기 신청학점에 따라 수강료(등록금)가 달라지므로 유의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등록금 납부 → 학점단위등록 참조

※ 등록금 납부 기한 : 2019-1학기 등록금을 납부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하여야 함.

3. 현장실습 중도취소 절차 및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가. 현장실습 중도취소 처리 방법

- 취소방법 : 교육자료집 14페이지 **[별첨6]**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소속학부(과)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미제출 시, 정상 취소 접수 처리 불가 (수강료 환불 미처리 등)

나. 납입금(수강료, 등록금)의 반환

1) 근거: 학칙 제65조(납입금의 반환) 이미 납입한 납입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 된 금액 전액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현장실습 수강료 반환 기준 (※ **납입금 반환인정 일자 : 현장실습 취소신청서 제출 접수 일자 기준**)

사유발생시기	반환금액
당해학기 실습개시일 까지	납입금 전액
실습기간 변경 및 인정학점 수 변경을 실습종료 후 고지하였을 시	없음 (납입금 반환불가)

※ 다만, 반환 원칙에도 불구하고 실습기간 중 본인의 사정(어학연수, 별도의 교내 프로그램 참여로 인한 학점이수 불가, 개인사정 등) 또는 잘못으로 실습을 중단 (포기, 취소, 허위발견) 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납입금 반환인정 일자는 현장실습 취소의사를 밝힌 후 최소 한달 소요될 수 있음

※ 성적처리 후, 본인의 과오로 인하여 취득학점 변경 시 (6학점→3학점)에는 수강료 반환 절대 불가

IV. 운영 절차

1단계	참여희망 학생 모집	학기별 학생 집중모집 기간 1페이지 참고
	※ 현장실습 신청 자격요건을 정확히 숙지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소속 학부(과) 행정실로 신청서 접수 확인 연락	
	신청방법	학생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 관리] - [신청서작성(국내)] 에서 신청서 작성
↓		
2단계	실습생 선발 : 면접 등을 통하여 실습생 선발	각 소속 학부(과) 및 실습기업 진행
	현장실습 신청학생 대학 사전면접 또는 자기소개서 검토를 통한 실습생 교수추천 -> 실습생 기업선발 ※ 기업(기관)의 경우에 따라 기업(기관)별도 현장실습생 사전 면담 가능	

3단계	현장실습 협약 체결 (전자 협약)	현장실습 시작 최소 3일 이전
	기업(기관) · 학생 · 대학 간의 현장실습 동의 협약 체결 ※ 실습기업(기관)에서 별도의 직접 협약이 필요한 경우, 작성 및 날인 후 실습기업(기관) 대학 각 1부씩 보관	
4단계	수강료 납부 (실습 시작 3일 전까지 본인 명의로 입금)	실습시작 전 (수강료 납부 집중기간에 입금)
	※ 정규학기(2019-1) 학점인정 신청자는 등록금 으로 납부 ※ 계절학기 학점인정 신청자는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대구은행 91000-1127-1790 영남대학교 총장)	
5단계	현장실습 수행	단기, 중기(2018.12.24.~2019.02.22.) 장기(2019.01.02.~2019.07.17.)
	실습기업(기관)별 현장실습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진행 ※ 대학공통 현장실습 교과목을 전공학점으로 신청하는 경우, 실습시작 후 2주 이내까지 학점인정신청 작성	
	작성방법	학생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에서 출근부, 주간보고서 작성 ※ 학점인정신청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학점인정신청] 작성
6단계	현장실습 종료	실습 종료 후 3일 이내
	실습생 실습종료일자까지 출근부 작성 완료 후, 실습기업 관리자에게 하단 기업부분 작성 요청	
	작성방법	학생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에서 최종보고서, 설문조사 작성 기업 -> [현장실습홈페이지]-[기업관리]-[현장실습진행관리]- 출근부, 실습생평가, 설문조사 작성
7단계	실습결과 평가 및 학점인정	단기, 중기(2019.2월) 장기(2019.7월 ~ 8월)
	- 대학 : 실습결과 평가 및 학점인정, 전공학점 인정은 학부(과) 심사 - 학생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에서 현장실습 이수확인 출력 가능	

V. 기타

1. 현장실습 불인정 및 취소

- 가. 현장실습 신청학점을 포함한 Pass학점이 졸업최저학점의 2분의 1을 넘게 될 경우
- 나. 현장실습생이 실습 기업(기관)과 협의 없이 실습을 중단 또는 무단결근하거나 포기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다. 자격증 대여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및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 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 라. 전화 및 방문지도 등으로 현장실습 실태를 점검할 때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작성 완료하지 않은 경우**
- 바. **실습 시작일 전까지 등록금 또는 현장실습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사.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아. **현장실습 기간 중 다른 프로그램에 중복참여 불가** 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경우

2. 현장실습 제외 기업(기관)

- 가.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기업**, 다단계 판매업체, 보험회사(다만, 외근 영업직을 제외하고 가능), 단순노무직종 등
- 나. 야간(22:00~07:00) 근무 직종 및 기타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기관) 및 직종

Ⅵ. 현장실습 참가 시 유의사항 및 참가신청 안내

1. 참가 시 유의사항

가. 실습기업(관) 협조 요청사항

- 실습기업(관)별 실습생 안전교육 실시 요청
- 실습생 현장실습 관리·평가를 위해 기업용 현장실습 홈페이지 사용 매뉴얼 안내 및 실습종료 후 3일 이내까지 현장실습 평가(학생 출근부, 실습생 평가, 설문조사) 처리 완료 협조 요청

나. 현장실습 기간 중 **안전사고 발생** 또는 실습기업(기관)에 재물손상 등을 끼친 경우, 반드시 소속 학부(과)로 빠른 시일 내 연락하여, 관련 후속 업무처리(보험처리 등)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

다. **현장실습 수행기간 중에는 교내·외 타 교육프로그램(OPP, Window to the world, 취업캠프, 리더십캠프, 해외자원봉사 등)에 중복 참여가 불가합니다.** 추후 관련사실 적발 시,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인정 취소 처리 및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2. 현장실습 참가신청 및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안내

가. 참가신청 및 실습종료 후 제출서류 작성 경로 (온라인 작성)

- 1) 학생 : [URP 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2) 기업 : 현장실습 홈페이지(<http://pra.yu.ac.kr>)

나. 현장실습 참가 신청

구분	작성	내 용
실습생 (학생)	① 현장실습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 URP - [현장실습관리]에서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소속학부(과) 행정실로 정상 접수처리 확인 연락 필수 (본인 신청내역 접수 처리 누락 가능) • 장기현장실습 신청자 :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 교수확인서(추천서) 제출 ▶ 제출처 : 소속학(부)과 행정실 / 추천서 서식 : 13페이지 [별첨5] 참고 • 졸업(수료)예정자가 장기 현장실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등에 대해 학부(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함
	② 현장실습 참여학생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식 : 12페이지 [별첨4] 참고 작성 • 제출처 : 소속학부(과) 행정실 • 제출기한 : 현장실습 신청 접수 시 (실습파견 전) ※ 해당서류 미제출 시, 현장실습 참여 신청 불가
	③ 개인정보동의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확인 저장 필수
	④ 전공학점 인정 심사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대상 : <u>대학공통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자 중 전공학점 인정 신청자</u> ※ 전공학점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지 확인 후 신청 (P. 2 대학공통 학점인정 참고)

다. 현장실습 종료 후 제출서류 작성

구분	작성	내 용
실습생 (학생)	① 출근부	출근부 작성 후, 현장실습 종료일에 실습기업(기관) 관리자께 최종 확인 ※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본인 작성 출근부 확인 가능, 기업 담당자 최종확인 저장 필수
	② 현장실습 주간보고서	주차별 주간보고서 작성 (※ 실습기간 지정 : 주 단위로 작성 (평일 5일 기준 기간입력))
	③ 최종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습 전반적 내용, 느낀 점, 취업연계사례, 건의사항 등 작성 • 자유 형식으로 2페이지 이상 작성하되, 주제별로 소제목을 붙여 작성
	④ 설문조사	현장실습 설문조사 작성
	⑤ 현장실습 이수확인	현장실습 성적평가 완료 후, 결과가 Pass이면 URP에서 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출력 가능
기업(기관) (관리자)	① 출근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 종료일에 실습생 출근부 작성 완료 후, 기업 관리자 학생 출근부 검토 확인 •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진행관리] - [출근부관리] 확인
	② 현장실습평가	•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진행관리] - [실습생평가] 작성
	③ 설문조사	• 홈페이지 - [기업관리] - [현장실습 진행관리] - [설문조사] 작성

[별첨1] 현장실습 기간조건표 (2019-1학기)
현장실습 기간조건표 (2)
▶ 학점인정학기 : 2019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장기 현장실습 (12주 이상)		장기 현장실습 (16주 이상)		장기 현장실습 (20주 이상)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시작일자	종료일자
2019.03.04.(월)	2019.05.27.(월)	2019.02.07.(목)	2019.05.31.(금)	2019.01.02.(수)	2019.05.28.(화)
2019.03.05.(화)	2019.05.28.(화)	2019.02.08.(금)	2019.06.03.(월)	2019.01.03.(목)	2019.05.29.(수)
2019.03.06.(수)	2019.05.29.(수)	2019.02.11.(월)	2019.06.04.(화)	2019.01.04.(금)	2019.05.30.(목)
2019.03.07.(목)	2019.05.30.(목)	2019.02.12.(화)	2019.06.05.(수)	2019.01.07.(월)	2019.05.31.(금)
2019.03.08.(금)	2019.05.31.(금)	2019.02.13.(수)	2019.06.07.(금)	2019.01.08.(화)	2019.06.03.(월)
2019.03.11.(월)	2019.06.03.(월)	2019.02.14.(목)	2019.06.10.(월)	2019.01.09.(수)	2019.06.04.(화)
2019.03.12.(화)	2019.06.04.(화)	2019.02.15.(금)	2019.06.11.(화)	2019.01.10.(목)	2019.06.05.(수)
2019.03.13.(수)	2019.06.05.(수)	2019.02.18.(월)	2019.06.12.(수)	2019.01.11.(금)	2019.06.07.(금)
2019.03.14.(목)	2019.06.07.(금)	2019.02.19.(화)	2019.06.13.(목)	2019.01.14.(월)	2019.06.10.(월)
2019.03.15.(금)	2019.06.10.(월)	2019.02.20.(수)	2019.06.14.(금)	2019.01.15.(화)	2019.06.11.(화)
2019.03.18.(월)	2019.06.11.(화)	2019.02.21.(목)	2019.06.17.(월)	2019.01.16.(수)	2019.06.12.(수)
2019.03.19.(화)	2019.06.12.(수)	2019.02.22.(금)	2019.06.18.(화)	2019.01.17.(목)	2019.06.13.(목)
2019.03.20.(수)	2019.06.13.(목)	2019.02.25.(월)	2019.06.19.(수)	2019.01.18.(금)	2019.06.14.(금)
2019.03.21.(목)	2019.06.14.(금)	2019.02.26.(화)	2019.06.20.(목)	2019.01.21.(월)	2019.06.17.(월)
2019.03.22.(금)	2019.06.17.(월)	2019.02.27.(수)	2019.06.21.(금)	2019.01.22.(화)	2019.06.18.(화)
2019.03.25.(월)	2019.06.18.(화)	2019.02.28.(목)	2019.06.24.(월)	2019.01.23.(수)	2019.06.19.(수)
2019.03.26.(화)	2019.06.19.(수)	2019.03.04.(월)	2019.06.25.(화)	2019.01.24.(목)	2019.06.20.(목)
2019.03.27.(수)	2019.06.20.(목)	2019.03.05.(화)	2019.06.26.(수)	2019.01.25.(금)	2019.06.21.(금)
2019.03.28.(목)	2019.06.21.(금)	2019.03.06.(수)	2019.06.27.(목)	2019.01.28.(월)	2019.06.24.(월)
2019.03.29.(금)	2019.06.24.(월)	2019.03.07.(목)	2019.06.28.(금)	2019.01.29.(화)	2019.06.25.(화)
2019.04.01.(월)	2019.06.25.(화)	2019.03.08.(금)	2019.07.01.(월)	2019.01.30.(수)	2019.06.26.(수)
2019.04.02.(화)	2019.06.26.(수)	2019.03.11.(월)	2019.07.02.(화)	2019.01.31.(목)	2019.06.27.(목)
2019.04.03.(수)	2019.06.27.(목)	2019.03.12.(화)	2019.07.03.(수)	2019.02.01.(금)	2019.06.02.(화)
2019.04.04.(목)	2019.06.28.(금)	2019.03.13.(수)	2019.07.04.(목)	2019.02.07.(목)	2019.07.01.(월)
2019.04.05.(금)	2019.07.01.(월)	2019.03.14.(목)	2019.07.05.(금)	2019.02.08.(금)	2019.07.02.(화)
2019.04.08.(월)	2019.07.02.(화)	2019.03.15.(금)	2019.07.08.(월)	2019.02.11.(월)	2019.07.03.(수)
2019.04.09.(화)	2019.07.03.(수)	2019.03.18.(월)	2019.07.09.(화)	2019.02.12.(화)	2019.07.04.(목)
2019.04.10.(수)	2019.07.04.(목)	2019.03.19.(화)	2019.07.10.(수)	2019.02.13.(수)	2019.07.05.(금)
2019.04.11.(목)	2019.07.05.(금)	2019.03.20.(수)	2019.07.11.(목)	2019.02.14.(목)	2019.07.08.(월)
2019.04.12.(금)	2019.07.08.(월)	2019.03.21.(목)	2019.07.12.(금)	2019.02.15.(금)	2019.07.09.(화)
2019.04.15.(월)	2019.07.09.(화)	2019.03.22.(금)	2019.07.15.(월)	2019.02.18.(월)	2019.07.10.(수)
2019.04.16.(화)	2019.07.10.(수)	2019.03.25.(월)	2019.07.16.(화)	2019.02.19.(화)	2019.07.11.(목)
2019.04.17.(수)	2019.07.11.(목)	2019.03.26.(화)	2019.07.17.(수)	2019.02.20.(수)	2019.07.12.(금)
2019.04.18.(목)	2019.07.12.(금)	2019.03.27.(수)	2019.07.18.(목)	2019.02.21.(목)	2019.07.15.(월)
2019.04.19.(금)	2019.07.15.(월)	2019.03.28.(목)	2019.07.19.(금)	2019.02.22.(금)	2019.07.16.(화)
2019.04.22.(월)	2019.07.16.(화)	2019.03.29.(금)	2019.07.22.(월)	2019.02.25.(월)	2019.07.17.(수)

※ 유의사항

- ① 실습기간의 경우 학생과 대학·기업(기관)이 협의하여 위 조건표의 최저 실습기간 이상으로 협약이 가능함.
- ② 현장실습은 평일 주5일 근무 원칙으로, 주말(토, 일요일)은 실습가능 기간에 포함될 수 없음.
- ③ 2018년도부터는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기업(기관)의 휴무일,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규정개정)

[별첨2]

중소기업 취업전제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

1. 장학명 : 희망사다리 장학금

2. 추진배경

가.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취업 활성화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 전념)

나.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및 대학 내 창업문화 조성 (창업 친화적 교육환경을 통해 창업문화를 조성하고 다양한 형태의 고용 창출 가능)

3. 장학금 소개

가. 신청대상 (지원자격)

구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신청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교육법 제2조 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중 사업 참여 신청 대학 (단,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 대학과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교육 유관센터* 또는 창업동아리** 운영 대학 *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정신센터, 창업지원단, 기술창업 교육센터 등 ** 창업동아리 조건 : ①지도교수가 있어 학기별로 학생지도 ②참여학생 다수 ③구체적 결과물 제출·평가
장학생 신청 자격	학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 3학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년제: 최대 4학기, 5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전문대 2학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제: 최대 2학기 - 3년제: 최대 4학기 - 4년제 이상: 최대 6학기 지원 (단, 전공심화과정은 제외)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참여 신청 대학 및 소속 대학의 사전 추천을 받은 자	
	성적	소속대학 학사규정 상 직전학기 최소학점을 이수하고 백분위 70점 이상	
	선수과목	'16년도부터 폐지	창업강좌 이수(또는 예정)자
	의무사항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2,000억원 미만) 근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사업(내일채움공제)에 참여 중인 중견기업은 매출액 기준에 관계없이 가능함	중소기업 창업 및 유지 ※ 의무창업 인정 기준 : 6개월 간, 약 67만원* 이상 매출액 발생 * 졸업연도의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기준 (2017년 1인/661,172원)

4. 지원절차

신청 대학	▶ 장학금신청 학생	▶ 선발		▶ 장학금지급	
		대학	한국장학재단	학생	한국장학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상담/수요인원 신청 신청학생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에서 등록한 학생만 장학금 신청 가능 (창업) 증빙서류 제출(홈페이지) (공통) 서울보증보험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학생 추천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른 선발 우선순위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천학생 자격 조건검증 및 우선 선발결과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보증보험 보증료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선발 결과 통보 대학 장학금 배분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급)

5. 장학금 지원규모

구분		취업지원유형	창업지원유형
지원 내용	등록금	매 학기 대학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전액 - 학제 및 전공별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지원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최대 지원횟수 상관없이 제한	
	장려금	취업·창업준비장려금 200만원 -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자에 한함	

6. 장학금 일정공지 등 상세 내용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별첨3]

현 장 실 습 F A Q

- Q) 복수전공자 및 편입학생은 대학공통 현장실습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전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일반선택으로만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
- Q) 부전공자는 대학공통 현장실습에서 전공선택으로 학점취득이 가능한가요?**
 부전공자는 부전공에서 전공선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제1전공(주전공)에서는 전공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실습직무 내용이 주전공 관련일 경우 신청 가능)
- Q) 현장실습 인정학점은 졸업 전 최대 몇 학점까지 이수 가능한가요?**
 국내 또는 해외 현장실습 각 교과목별 최대 36학점까지 이수 가능하며,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 교과목을 합하여서는 최대 36학점 까지 이수 가능합니다.
- Q) 계절학기 현장실습 교과목은 최대 몇 학점까지 이수 가능한가요?**
 방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 과목과 타 계절학기 교과목을 합하여 최대 6학점 초과 수강신청은 불가합니다. (6학점 까지는 가능)
 6학점 이내에서 현장실습 교과목 외 타 계절학기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기간과 같은 기간에 중복 이수할 수 없음
 ※ 단, 인터넷 강좌는 기간중복과 상관없이 수강신청 가능학점 수(6학점) 내 에서 신청가능
- Q) 장기현장실습 신청 시,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 상세내용은 4페이지 Ⅱ-1. 장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유의사항 항목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9개 학기 학점 단위 등록학생인데, 2019-1학기 장기현장 실습 신청이 가능한가요?**
 2019-1학기 장기현장실습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단위 등록이 3, 6, 9학점으로 학점단위 등록생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학생의 졸업학점 여부를 판단하여 최소학점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기현장실습 기간 전체 실습하여야만 학점 취득이 가능합니다. 3학점을 신청한다하여 4주만 실습할 수는 없습니다.
- Q) 졸업(수료)예정자의 현장실습 참여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세내용은 교육자료집 1쪽 4번 [현장실습 참가자격]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졸업유예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 학점인정을 부분적으로 취득할 수 있나요?**
 현장실습 학점은 부분적으로 취득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현장실습 20주 이수, 18학점 인정 신청자가 졸업유예를 하기 위해 15학점만 취득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학점 그대로 성적취득이 됩니다.
- Q) 학점인정은 언제 되는 건가요? (졸업예정자, 수료예정자 필독 ✓)**
 일반적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2018학년도 동계 현장실습 학점인정 시기는 2019년 2월 중에 성적 누적처리가 되며, 2019년 2월 졸업예정자 및 수료예정자는 1월 2째 주 졸업사정 전까지 반드시 모든 성적평가가 완료되어야 누적처리가 가능합니다.
 (※ 졸업예정자 및 수료희망자가 위 기간을 놓치는 경우, 추가적인 성적평가는 절대 불가합니다.)
- Q) 현장실습 이수 후 이수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현장실습 이수 후 결과가 Pass인 경우, 학생종합정보시스템 - [현장실습관리] - [현장실습 이수확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별첨4] 작성완료 후 소속학부(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현장실습 참여 학생 동의서



1. 현장실습 신청자 본인의 학적기본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		학번	
성명		학년	성별
재학상태		예정상태 (URP에서 확인)	졸업예정 (), 수료예정 () 조기졸업 대상자 ()
입학구분	신입학, 편입학 (O 표시)	교직이수	(O, X) 전공
부전공	(O, X) 전공	복수전공	(O, X) 전공

※ 위 본인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제공 및 수집에 동의합니다. (예, 아니오)

2. 다음의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읽은 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하시면 체크(V)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휴학, 중도포기 등의 개인 단순사정에 의해 현장실습 이수학기에 학점취득을 못하는 경우	
2. 현장실습 유선상 지도 또는 지도방문 시 약정된 실습장소에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또는 2회 이상 정상적인 근무상황 확인(ex. 무단결근) 이 불가능한 경우	
3. 현장실습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까지 결과보고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한, 불성실한 실습태도로 인한 실습기업(관)으로 부터의 중도 취소 통보 및 실습보고서 평가 미달 로 인한 성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학점 불인정 및 지원금 지원 불가	
4. 대학공통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시, 전공학점 취득 요건에 대해 명확히 확인하였음 - 전공학점 취득 불가자 : 편입생, 복수전공자, 부전공자	
5. 현장실습 이수학기 내 현장실습 교과목 외 잔여학점에 대한 타교과목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확인 및 숙지하였음 ※ 책자 3페이지 6번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사항 확인 ※ 계절학기 교과목 최대 취득가능 학점 수 : 6학점 까지 인정 (현장실습 교과목 포함) ※ 현장실습 기간 내 오프라인 교과목, 교내 타 운영프로그램 등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6. 계절학기 수강료 미납 또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지 않아 납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7. 학생 URP 종합정보시스템상에 등록된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내역을 명확히 확인하였음. (현장실습 신청구분, 학점인정학기, 이수구분, 교과목명 등)	
8. 졸업(수료)예정자 에 대한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음 (예, 성적처리 기간 및 실습가능 기간)	
확인	현장실습 참여 신청 시, 실습기업의 학생 실습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하였으며 , 이에 충분히 동의하여 현장실습을 참가 신청합니다. ※ 우리 대학에서 현장실습 참여기업(관)에 권장하는 학생 실습지원금은 월 40만원 이상 이나, 실습기업별 재량에 따라 실습지원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확인	학생 개인 단순사정으로 인해, 현장실습 진행 도중 학교 및 기업과의 협의 없이 중도취소 등으로 대학과 기업 간의 현장실습 협약을 무단파기할 시 추후 현장실습 참가신청에 자격 제한 될 수 있음

본인은 실습학기 교육과정 실습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고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실습기간 중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재해보험상의 책임을 제외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으로 하겠음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실습 학점 불인정 및 대학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금 수령자의 경우 전액 반납)에 동의합니다.**

2018 년 월 일

성 명 : _____ (서명)

영남대학교 총장 귀하

[별첨5] 작성완료 후 소속학부(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장기 현장실습 교수추천서

■ 추천대상자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성 명		학 번	

■ 실습기업(기관)명 :

■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장기___주 이상)

■ 실습직무 :

■ 추천사유

위 학생을 장기 현장실습 교육과정 참가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 _____ (날인 또는 서명)

[별첨6] 작성완료 후 소속학부(과)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현장실습 취소 신청서

1. 취소신청자 인적사항

대 학		학부(과)	
전 공		학 년	
성 명		학 번	

2. 실습업체명 :

3. 실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단기, 중기, 장기 중 체크(√) 표시 / ____주 이상)

4. 실습취소 신청일 :

5. 취소사유 :

6. 확인사항 (확인 후 동의 시, 에 √ 표시)

수강료 반환기준 확인

실습중도 취소로 인해 현장실습 교과목 학점 취득 불가 시, 대학 실습지원비 지원 불가 안내 확인

상기와 같은 사유로 _____학년도 _____학기 현장실습을
중단하게 되어 이에 현장실습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_____ (날인 또는 서명)

학부(과) 확인자 _____ (날인 또는 서명)